

의안번호	2203854
의 퇴 인	부승찬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D3692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설치)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의무규정
2	안 제4조(직무)	사령부는 군 방첩업무, 군 보안업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직무를 수행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둠(제1항)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국군방첩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국군방첩학교,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국방보안연구소를 둠(제2항)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사령관은 제4조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조직)	국가는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제2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둠(제3항)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손실보상)	국가는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제2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둠(제3항)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2	안 제4조(직무)	
3	안 제7조(조직)	
4	안 제12조 (손실보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함)는 「국군방첩사령부령」¹⁾에 의해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직은 사령부 본부 2개 처와 30여 개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있음
 - 사령부 인력은 장교 및 부사관 1,700여명, 군무원 600여명, 병 700여명 등 총 3,000여명 수준임
 - 2024년 1,047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사령부의 설치, 직무, 조직과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임
- 다만, 제정안 제12조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1)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 제33409호)

5년간 손실보상 관련 자료는 없어 현 시점에서 손실보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